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03. 1. 17.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괴정2주거환경개선지구내(양지마을) 어린이집(보육시설)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에 따른 운영비(국,시비)보조 및 위탁운영근거 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으로 용어의 변경, 영유아보육법개정, 보육위원회의 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 등 조례개정 사유 발생

2. 주요골자

- 양지마을 어린이집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포함
(제2조 명칭 및 위치신설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라 용어 변경(제4조 1항 1호)
생활보호대상자 →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
- 영유아보육법개정으로 표준보육단가 결정권한 변경
보건복지부장관 → 시·도지사(영유아보육법 제24조)
- 보육위원회기능이 사회복지위원회에 통합(사회복지위원회 설치 운영
조례 기 제정)

3. 참고사항

-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(보육시설의 설치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항(용어의 정의)
- 영유아보육법 제24조(비용의 수납)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제8호 양지마을 어린이집은 사하구괴정동 260-430번지에 둔다.

제4조제1항1호 중 "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"를 "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녀"로 한다.

제5조 중 보육료는 "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"를 보육료는 "영유아보육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" 로 한다.

제10조 "보육위원회의 심의"를 "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"로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과위치)어린이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7(생략)</p> <p>8. <신 설></p>	<p>제2조(명칭과위치) ----- -----.</p> <p>1. ~ 7(현행과 같음)</p> <p>8. 양지마을 어린이집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괴정동 260-430번지에 둔다</p>
<p>제4조(입소순위) ①(생략)</p> <p>1. <u>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</u></p> <p>2.~3(생략)</p>	<p>제4조(입소순위) ①현행과 같음</p> <p>1. <u>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녀</u></p> <p>2.~3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조(보육료등) <u>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 내에서 시설장이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</u></p>	<p>제5조(보육료등) ---- <u>영유아보육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표준보육단가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위원회</u>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</p>
<p>제10조(약정의 해제)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<u>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</u>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.</p> <p>1.~2(생략)</p>	<p>10조(약정의 해제) ----- ----- <u>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</u> -----</p> <p>1.~2(현행과 같음)</p>